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8.

발 의 자 : 박홍근·양이원영·최종윤  
양정숙·양기대·박성준  
맹성규·이수진(비)·조오섭  
박영순·홍성국·홍익표  
윤미향·서동용·김용민  
남인순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,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).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지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위치·규모·환경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·4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1.·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128조의2를 위반하여  
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 
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  
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 
자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